

교회음악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재정 2004. 3. 1.

개정 2016. 9. 2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구성)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대학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종류와자격)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지급금액) 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당해년도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혜대상) 장학금 수혜 대상은 교회음악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가정 형편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3. 학생조교
4.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와 직계 자녀
5.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추천) 지도교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한다.

제9조(추천의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원장 혹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10조(장학생의확정) 추천된 장학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제11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2-14-2~2

제12조(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조교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장학금지급중지및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1. 본 규정 제9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휴학자 (단, 입대휴학은 예외)
3. 제적 및 자퇴자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제15조(보칙) ①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승인하는바에 따른다.

② 본 세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세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세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세칙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 하되 성적향상장학금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세칙(제8조, 제14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의 종류

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금액	비고
신입생특별 장학금	1. 본 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콩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2. 본 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콩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 또는 해당 전공의 일반 콩쿨(외국포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3. 본 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콩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자 또는 해당 전공의 일반 콩쿨(외국포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4. 입학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수상 경력만 인정하며, 교외 콩쿨의 등급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한다.	첫 학기 등록금의 100% 첫 학기 등록금의 50% 첫 학기 등록금의 25%	
신입생우수 장학금	1. 학부와 동일전공자(복수전공자포함)로서 백분위 점수가 95%이상이고 교회음악 봉사경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2. 국내외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교회음악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첫학기 등록금의 50%	
성적우수 장학금	1. 석사과정 재학생 중 10학점 이상을 과락 없이 취득하고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95%이상으로 총 재학생중 전체 수석을 차지한 자	당해학기 등록금의 50%	
성적향상 장학금	1. 석사과정 재학생 중 10학점 이상을 과락 없이 취득하고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92%이상인자 중 성적우수 장학금 비수혜자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당해학기 등록금의 25%	
학업장려 장학금	1. 가정형편이 어려운 석사과정 재학생 중 10학점 이상을 과락 없이 취득하고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88%이상인자 중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대상은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시행함) 2. 성적우수 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 학업장려 장학금을 합한 장학금 수혜 학생의 배정인원은 해당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총 수업료의 15%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배정인원 기준은 해당년도 장학금 배정 예산의 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당해학기 등록금의 25%	
복지 장학금	1. 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입학금 및 등록금액의 50%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학생조교 장학금	1. 본 대학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원에서 주3일 또는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조교의 종류는 A급(주5일 근무, 1일 4시간), B급(주3일 근무, 1일 5시간), C급(주3일 근무, 1일 4시간)으로 한다. 3. 학생조교는 지정된 기간에 교학과에서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이 임명 한다.	학생조교의 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	